

Client Alert

March 2020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십시오:

Kherk Ying Chew
Partner
+603 2298 7933
kherkying.chew@wongpartners.com

Brian Chia
Partner
+603 2298 7999
brian.chia@wongpartners.com

Ee Von Teo
Partner
+603 2298 7810
eevon.teo@wongpartners.com

Eddie Chuah
Partner
+603 2298 7939
eddie.chuah@wongpartners.com

Sujintana Mongkolthanit
Senior Associate
+60322987912
sujintana.mongkolthanit@wongpartners.com

Loo Mynn Keng
Associate
+603 2299 6512
mynnkeng.loo@wongpartners.com

Aileen Yeo
Associate
+603 2298 7978
aileen.yeo@wongpartners.com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이동 제한 명령 (Restriction of Movement Order)

말레이시아에 COVID-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0 년 3 월 16 일 말레이시아 수상은 확산 차단을 위한 방편으로 이동 제한 명령("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동 제한은 2020 년 3 월 18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2 주간 지속됩니다.

명령

간단히 요약하면, 본 명령은 말레이시아 전국에 다음을 제한합니다:

- (a) **모임 금지 - 종교, 스포츠, 사회 및 문화 행사와 모임 금지**
- (b) **사업장 휴업 - 아래 (i), (ii)를 제외하고는 종교 장소,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사무소 모두 휴업:**
 - (i) 생필품 공급을 위한 슈퍼마켓, 시장, 편의점 ("생필품 판매소")
 - (ii)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관개, 오일, 가스, 연료, 윤활유, 방송, 금융, 은행, 보건, 약국, 소방, 감옥, 항구, 공항, 안전, 방위, 청소, 소매 및 식품 공급 관련자 ("필수 서비스 제공자")
- (c) **교육 기관 휴교 - 초중고, 대학교 모두 휴교**
 - (i) 모든 종류의 유치원, 공공 및 민간 초중고, 대학 이전 교육 기관
 - (ii) 공공 및 민간 대학, 기술 전문 교육 기관
- (d) **여행 금지 및 요건**
 - (i) 말레이시아 국민은 외국으로 여행 금지
 - (ii)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귀국하는 말레이시아 국민은 건강 상태 확인하고 14 일 자가 격리
 - (iii) 모든 관광객 및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입국 금지

비준수의 법적 책임

본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방지법 1988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ct 1988, "PCIDA")와 경찰법 1967 (Police Act 1967, "PA")를 근간으로 합니다. 본 명령의 집행을 위해 PCIDA 에 따라 경찰이 지원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a) 법에 의거 체포 대상에 대한 체포권
- (b) 기소권



(c) 수익, 소비, 위생, 격리,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법 집행 지원

명령의 비준수는 PCIDA의 위반에 해당되며, 유죄 확정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i) 첫번째 위반에 대해서,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둘 다
 - (ii) 두번째 위반에 대해서,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둘 다
 - (iii) 위반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매일 최대 RM200/일의 추가 벌금
- PCIDA에는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위반의 벌금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수익 감소와 함께 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간접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려하게 됩니다. 일부 기업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고객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휴업

기업이 원거리 근무 (즉, 재택 근무)의 형식으로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고, 기업의 사업이 생필품 판매소 및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업의 사업장은 휴업해야 합니다.

여행 제한

여행 제한은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 소지자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명령의 발효 시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안적 근로 형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안적 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 (a) 실행이 가능한 한도에서 재택 근무
- (b) 가상 회의 (비디오 콜 혹은 오디오 콘퍼런스 콜)

기업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대안적 근로 형태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 태도를 모니터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택 근무에 대한 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제한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는 휴업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부는 휴업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감면할 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를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노동 재판소에 건설적 해고의 이슈로 다투어질 때 본 가이드라인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하거나 유급 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의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의 특성이 재택 근무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직원은 반드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 / 급여 삭감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직원에게 무급 휴가 혹은 급여 삭감을 강제하는 것은 고용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며, 직원이 건설적 해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무급 휴가 혹은 급여 삭감에 대한 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요청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인원 감축 혹은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경비 절감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제안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명령 2020 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인원 감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불공정 해고의 소송에 당면했을 때 인원 감축을 피하기 위한 단계들을 취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 (a) 인원 감축을 해야하는 적합한 비즈니스의 사유가 있으며, 실질적인 증거들로 사유를 설명 가능
 - (b) 인원 감축은 말레이시아 노무 관행에 부합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실행됨, 즉, 고용 종료 고지 의무 및 퇴직 위로금 지급 등
- 말레이시아 노동법이 보호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결론

기업은 본 명령과 제한 및/혹은 금지 사항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준법 경영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PCIDA 와 PA 하의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명령의 적용이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저희는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자문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